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 기준

□ 비수도권 지역인재 정의

1.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비수도권 지방학교 범위

1.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나.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대학알리미’ 사이트 상의 학교 정보 조회 등을 통해 분교 해당 여부에 대해 지원자가 반드시 확인)
-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가 아님

- 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라.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2.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가.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나.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다.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라.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3.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나.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다.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4. 학교 소재지가 변경 된 경우나 2개 대학 이상 졸업자 등은 아래 기준을 따름

가. 서울·경기·인천 소재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서울·경기·인천 소재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

나. 지방소재 학교가 서울·경기·인천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서울·경기·인천 소재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

<예 시>

<서울소재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 졸업 :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예정) : 해당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해당
- ※ 단,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서울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지방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지방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서울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지방대학 중퇴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해당
- 서울소재대학 중퇴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해당
- ※ 단,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지방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의 경우 : 해당
- 서울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의 경우 : 비해당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